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7260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4. 11. 2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508,364원 및 그 중 585,704,884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전남 고흥군 E 임야 78,744m²에 관하여 2013. 9.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가.항의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3. 9. 12. 접수 제157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2010. 3. 18. 주식회사 선우엔터테인먼트(아래에서는 '선우'라고 한다)와 선우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아래에서는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피고 A'이라 한다), B, C는 선우의 원고에 대한 그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3. 10. 31. 우리은행에 912,664,848원을 변제하였고, 그 중 326,959,964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6. 23.까지 법적조치비용 합계 7,708,17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6,005,820원을 회수하였다.

피고 B은 2013. 9. 9. 피고 D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2013. 9. 12. 피고 D에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맺어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 A, B, C에 대하여 구상금 원리금 604,508,364원{= 잔여 원금 585,704,884원(= 원금 912,664,848원 - 회수금 326,959,964원) + 잔여 법적조치비용 1,702,350원(= 7,708,170원 - 6,005,820원) + 원금 회수금 부분에 관한 확정지연손해금 17,101,130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585,704,8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재판장판사박이규

판사이세훈

판사류지미